

'98. 주 요 업 무 보 고 서

1998. 2.

환 경 관 리 과

보 고 순 서

I. 일 반 현 황

II. '98. 주요 업무 보고

1. 환경개선부담금
2. 배출업소관리 대책
3. 운행차배출가스 단속 강화

일 반 현 황

○ 직원현황

직 급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기능
정 원	19	1	3	8	5	2	
현 원	20	1	3	4	8	4	

○ 과 직제 및 계별분장 사무

환 경 관 리 계	환 경 지 도 계	생 활 공 해 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환경개선부담금 · 배출시설 허가 · 환경보전관리 홍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수질, 대기오염배출업소 점검 · 소음, 진동배출업소 점검 ·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 · 행정처분 및 배출부과금부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동차공해단속 ·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· 신고처리 및 점검 · 유독물업소 관리

○ 환 경 현 황

가. 배출시설현황

요 인 구 분	계	대 기	수 질	소 음·진 동	비 고
총 계	475	151	184	140	
허 가	162	67	19	76	
신 고	313	84	165	64	

나. 유해화학 물질 관리업소 현황

(단위 : 개소)

계	보 관 업	사 용 업	판 매 업	비 고
237	1	9	227	

'98 주 요 업 무 보 고

【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】

추진방향

○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환경 개선의 투자재원 합리적 조달

가. 부과징수

- 건물 : 소비유통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물
 - 연면적 160㎡ 이상 건물
 - 단, 공장 창고 주차장등 제외. 주택면제. 공공용 50%경감('98.1기분까지)
- 자동차 : 경유 자동차(매연여과장치 부착차량 제외)
- 납부의무자 : 부과기준일 (6.30, 12.31현재)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

(단위 : 백만원)

(98.1기분 ~98.2기분)

총 계		시 설 물 분		자 동 차 분		비 고
건 수	금 액	건 수	금 액	건 수	금 액	
67,500	7,190	9,500	3,420	58,000	3,770	

※ 98/2기분부터는 시설물 경우 경감대상시설물의 폐지로 부과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다
 자동차의 경우 운송사업용차량의 경우 8100원에서 12,150원으로 기존부과금 인상
 으로 부과금액이 증가될 전망이다

나. 부과 기간 및 납기

○ 부과 기준일

반기 별	부 과 기 준 일	부 과 기 간	납 기
'98년 1 기분	'97. 12. 31	'97. 7. 1 ~ 12. 31 까지	'98. 3. 16 ~ 3. 31 까지
'98년 2 기분	'98. 6. 30.	'98. 1. 1 ~ 6. 30 까지	'98. 9. 16 ~ 9. 30 까지

【 배출업소 관리 대책 】

추진방향

○ 오배소 염출음 물업발 질소생 배지사 출도업 원장 관단 리속리 강강 화화

가.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

- 대상 : 151 개소
- 추진 계획
 - 대표자 및 관리인 교육 : 년 1 회
 - 지도점검 : 업소별 등급(청, 녹, 황, 적)에 따라 차등 실시(년 1-4회)
 - 점검내역
 -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
 -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여부
 - 대기오염도 및 유황함량 검사
- 겨울철 대기오염행위 특별단속
 - 단속대상
 -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불법 오염물질 배출행위
 - 폐유, 기름걸레등 무단소각행위

나.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

- 대상 : 184개소
- 추진 계획
 - 관리인 교육 : 년 1 회
 - 지도 점검
 - 청색업소 : 139 개소 (년 1 회)
 - 녹색업소 : 39 개소 (년 1 회)
 - 황색업소 : 3 개소 (년 2 회)
 - 적색업소 : 3 개소 (년 3 회)
 - 점검 내역
 -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
 -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조업여부
 - 폐수 무단방류 여부
 - 기타 환경오염 행위

다. 소음·진동 배출업소 지도 점검

- 대 상 : 140 개소
- 추진계획
 - 관리인 교육 : 년 1 회
 - 지도 점검 : 년 1 회 (민원 발생시 : 수시점검)
 - 점검내역
 - 방지시설 적정여부
 - 자가측정 이행여부
 - 배출시설 변경여부

라. 대형공사장 집중관리

- 대 상
 - 비산분진 및 특정공사신고 공사장중 대형공사장
 - 아파트 공사장
 - 빌딩 및 공장 공사장
- 지도점검 : 민원발생 및 수시
- 소음측정검사

마. 유해화학물질 관리업소 점검

- 대 상 : 237 개소 (판매업: 227개소, 사용업 : 9, 보관업: 1개소)
- 추진계획
 - 지도점검
 - 정 기
 - 자체방제계획수립 대상업소 : 년4회(분기1회)
 - 유독물사용·보관업소 : 년2회(반기1회)
 - 유독물판매업소 : 년1회
 - 수 시 : 민원발생 및 필요시
 - 점검내역
 - 등록사항의 적정여부
 - 시설·장비, 유독물표시 및 유독물관리기준의 적정여부
 - 주변지역의 토양오염등 유독물 유출여부 확인
 - 신규화학물질 취급여부 확인
 - 제조등이 금지 또는 제한된 화학물질의 취급여부 확인
 - 유독물관리대장의 철저한 기록, 유지, 보존여부 확인
 - 유독물 관리자의 선임 및 준수사항의 이행여부
 - 유독물관리자 근무기록부 등 관련서류의 적정여부
 - 자체방제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준수여부 등

【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강화 】

추진방향

○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강화도
○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유도

가.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강화

1)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강화

○ 측정기 및 비디오 단속

- 대상 : 운행중인 휘발유, 경유, LPG사용 전차량
- 목표 : 35,000대
- 측정항목 : 일산화탄소, 탄화수소, 매연측정
- 단속장소 : (주)방림방적앞, 공군회관앞
- 내용 : 다수차량 보유업체 차고지 순회단속은(버스,택시등)
측정기 단속을 실시하고 도로통행차량 단속은 비디오
단속을 위주로 실시

○ 매연발생 차량 신고제 활성화

- 신고엽서 및 유선신고시 접수하여 정비점검 지시
- 신고차량에 대한 무료측정시행 (매주 화요일 구청광장)

2) 자율적인 배출가스 저감유도

○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구민홍보 강화

- 방법 : 반상회보, 공한문, 안내문 발송
- 내용
 -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차량관리 방법
 - 배출가스 기준초과시 조치내용 및 배출가스 무료 점검안내

○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

- 매주 화요일 구청광장
- 관내 관용차량 (영등포구청, 영등포경찰서, 세무서등)
- 관내 거주구민 차량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